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308호
- 나. 제안자 : 박성연 의원 (찬성의원 11명)
- 다. 제안일 : 2023. 10. 13.
- 라. 회부일 : 2023. 10. 23.

### 2. 제안이유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제6항 신설)
- 나.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제3항 신설)
- 다. 법제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 (안 제21조 제3항, 안 제22조의2 제1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3. 10. 26. ~ 10. 30.) 결과 : 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미래청년기획단) : 원안 가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하 ‘법’)」 개정 사항 중 취약계층 청년 고용과 금융지원 근거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12조 제6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항과 안 제22조의2 제1항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⑤ (생 략) <u>&lt; 신 설 &gt;</u>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b>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 ② (생 략) <u>&lt; 신 설 &gt;</u>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 ② (생 략) <b>③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생 략)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u>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u>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생 략) ③ _____ _____ _____ <b>요율</b> <b>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b>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제22조2(청년의 날) 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u>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제22조2(청년의 날) ① _____ _____ <u>「청년기본법 제7조」</u> _____ _____ _____.

## 나. 검토 내용

- (1) 취약계층 청년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수립(안 제12조제6항) 및 채무여건 개선과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안 제14조제3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사항('23.3.21. 일부개정, '23.9.22. 시행)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음

### 「청년기본법」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3.3월 법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청년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노동시장 진입과 금융 접근성 개선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일반적·포괄적 규정과 정책 수립 및 집행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2) 자구 수정의 사항 (안 제21조 제3항 및 안 제22조의2 제1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제3항과 제22조의2 제1항은 자구 수정 사항으로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으로 표현된 것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년기본법」으로 수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22조의2 제1항의 경우

시장이 청년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음

※ 참고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제3장 용어와 표현, 3. 자치법규 조항의 인용·표시 방법

나.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

어떤 자치법규 중에서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기하되, 둘 이상의 조항을 연이어 인용할 때에는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같이 다른 법령의 제명은 처음 나올 때에만 표기한다. 다른 법령의 제명과 조항이 같은 항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조”라고 표현한다.

####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6항은 시장이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안 제14조 제3항은 시장이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3.3월 개정되어 '23.9월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을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고 현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경제적 측면에 특화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경제적 측면의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포괄적 지원 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정책 수립 및 집행 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제3항과 제22조의2 제1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속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이 청년의 날 행사를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